

[서식 예] 사실조회신청 (보건소)

사 실 조 회 신 청

사 건 2018가단▲▲▲▲ 손해배상(의)

원 고 박여포

피 고 마동탁외1

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 소송대리인은 <u>피고를 정확하게 특정하기 위하여</u>다음 과 같이 사실조회를 신청합니다.

다 음

- 1. 사실조회할 기관

 청주시 서원구 보건소」
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사직대로 227(사직동)

 TEL.043)201-3235 , FAX.043)201-3289
- 사실조회할 내용
 별지와 같습니다.
- 3.첨부서류명함사본1부.

2018. 6. . 원고 〇 〇

◇ ◇ 지 방 법 원 귀중



[별지]

사실조회 할 사항

1. 사실조회 대상

명칭: 성화카톨릭의원

소재지 : 청주시 서원구 성화동 173번길 19, 4층

2. 사실조회할 사항

성화카톨릭의원(청주시 서원구 성화동 173번길 19, 4층)의 기관 개설 신고 및 휴·폐업 신고 변동 내역과 위 개설 의료인, 피고 마동탁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.끝.



| 제출법원 | 수소법원 | 관련조문 | 민사소송법 제294조 |
|------|--|------|-------------|
| 제출부수 | 신청서 1부 | | |
| 의 의 | 법원은 공공기관·학교, 그 밖의 단체·개인 또는 외국의 공공기관에게 그 업무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 또는 보관중인 문서의 등본·사본의 송부를 촉탁할 수 있으므로 이에 근거하여 이들에게 보고를 구함으로써 증거를 수집하는 특별증거조사절차를 말함. | | |
| 기 타 | •법원의 감정촉탁에 대한 의료기관의 회보결과 및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한 대한의사협회장의 회보결과는 사실인정에 관하여 특별한 지식과 경험을 요하는 경우에 법관이 그 특별한 지식, 경험을 이용하는데 불과한 것이며, 의료과오가 있었는지 여부는 궁극적으로는 그 당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경험칙에 비추어 규범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므로, 위 각 회보결과에 의료과오의 유무에 관한 견해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법원이 의사에게 과실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그 견해에 기속되지 아니함(대법원 1998. 7. 24. 선고 98다12270 판결). •사실조회 회보가 공문서인 경우 별도의 신빙성 있는 반대자료가 없는 한 그 기재와 어긋나는 사실인정을 할 수 없는 것임에도 합리적인 이유의 설시도 없이 위 증거들을 취신하지 않는다고 배척한 원심판결은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을 저지른 것임 (대법원 1990. 11. 23. 선고 90다카21022 판결). | | |